

「2026년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수출 역량을 보유한 유망 소상공인 수출 기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업」 지원사업 간단소개

❶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해외시장 진출 및 다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제품 고도화, 해외 인증 취득 등 교육·컨설팅, 사업화자금 및 판로지원 등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❷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오디션을 통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 [지원사업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스템 접수기간은 2026. 4.20(월) 16시부터 2026.5.15.(금),16시 까지입니다.

❹ 궁금한 점이 있어요!

☞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주관기관(p12, 문의처)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

❺ 소상공인 도약지원, 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사업(립스II) 등 동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선정될 경우, 소상공인은 한가지 사업을 최종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2(p15)' 확인바랍니다.

❻ 소진공의 글로벌 플랫폼 진출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등 타 수출 사업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업에서는 동시에 선정 될 경우, 당해 연도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참고2(p15)' 확인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수출 유망 로컬·혁신 소상공인의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 지원으로 소비재 수출 선도 기업인 「K-소상공인」 육성

(지원대상) 신청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수출 경쟁력이 강한 기업

<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신청요건 >

-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수혜업체, 강한 소상공인 선정기업,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용자(립스 I),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립스II) 旣 지원 기업
- ②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사업 민간운영사에게 기투자 받은 기업 (단, 현재 투자금 유지, 투자형태는 신주투자, 사업권투자, 지분전환계약 인정)
- ③ 최근 3개년도('23년~'25년) 중 1개년 연간 수출실적 3만 달러 이상 기업

(신청기간) 2026년 4월 20일(월) 16시 ~ 5월 15일(금) 16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수 (www.sbiz24.kr)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운영 상 사업기간이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❶수출역량 진단 및 특화교육, ❷수출상품화 등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❸수출판로 등 패키지 지원

(지원규모)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하여 로컬트랙 60개사, 혁신트랙 40개사 총 100개사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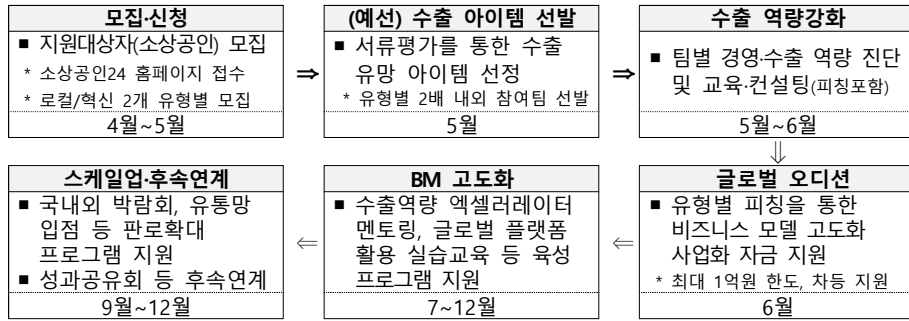
○ (로컬트랙) 지역 고유 특성과 자원, K-문화를 활용한 제품

○ (혁신트랙) 개인 라이프스타일(취향 등)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

○ (공통) 식품, 화장품, 패션, 생활용품 등 4대 소비재 중심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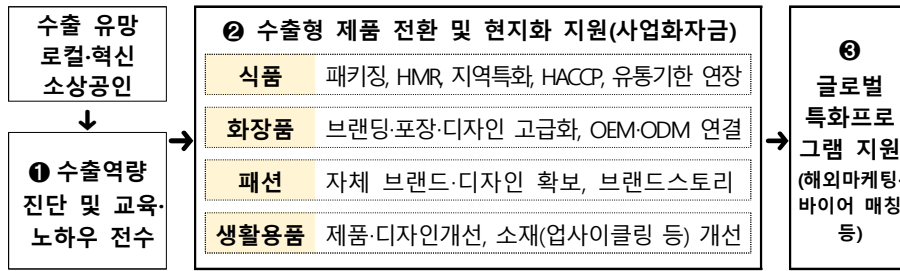
유형	해당 제품 예시
식품	간편식,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대체식품, 반려동물식품 등
화장품	색조, 영유아용, 기능성, 친환경 화장품 등
패션	의류, 신발, 가방, 모자, 악세서리, 주얼리 등
생활용품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취미용품, 의료기기, 미용기기 등

□ 지원절차



2 세부 지원내용

□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체계도



□ 수출 역량 진단 및 교육 실시

- **(역량진단)** 진출국가, 사업고도화 방향, 수출수준 등 조사 및 전문 툴(Tool) 등 활용한 데이터 기반 참여업체별 수출역량 진단
- **(특화교육)** 주요 권역별, 품목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 국가별 관세, 통관 및 수출 노하우 등 밀착 지원(피칭교육 포함)

□ 수출형 제품 전환 및 현지화 지원

- **(전문멘토단* 운영·지원)** 진출시장 판매에 적합한 제품 개발·개선, 진출국 현지 문화 등 반영한 제품개선 및 현지화 전략 수립 지원
- * 해외 수출 전문가, 선배 수출기업, 투자자, 브랜드·마케팅 전문가, 등

<주요 분야별 맞춤형 전략지원(안)>

구분	식품	화장품	패션	생활용품
제품포맷	간편식, 소용량 등	튜브, 세트상품 등	소재, 패턴	소용량, 현지문화
제품 고도화	현지 입맛, 저염저당, 비건·웰빙	제품구성, 피부톤, 종교, 문화 요소	체형, 기후, 선호 디자인·사이즈·소재	친환경, 패키징, 무향료 재료 등
기타	수출형 패키징, 해외인증	국가별 인증, 수요분석	브랜드, 로고, 철학 확보	국가별 품질, 포장재 인증

- **(사업화자금) 해외 진출에 적합한 제품개발, 브랜딩 등 BM고도화 및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차등지원)**

○ 사업비 집행항목

항목	상세내역
개발비	· 제품/서비스 수출 현지 고도화 등 개발 비용(용역비)
브랜드비	· 수출 브랜드(CI, BI) 디자인 고도화 설계 및 번역 용역비
전문가 활용비	· 통번역 서비스, 현지 서류 대행, 현지 법인 설립 등
재료구입비	· 수출 제품·서비스 현지화 목적 재료 구입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해외규격 인증 및 글로벌 인증(품질, 환경 등) 취득비 등 · 브랜드(CI·BI) 해외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임차료	· 국외 팝업 행사 임차료(국내 제외) · 제품/서비스 현지 고도화 목적 장비·기기 임차료
해외진출비	· 해외 진출 목적 마케팅 비용(해외 대상 홍보 비용) · 현지 창고 보관료, 관세사 수수료 등 물류 비용 · 무역 보증·보험료 등 · 국내외 수출 박람회 참가비 · 국외 수출 박람회 체류비(대표자 한정, 항공료·숙박비 자부담 50%)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 모든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 * 협동조합원 간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자 간 거래 금지 등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목적 외로 사용 불가
- * 세부 지원항목, 집행제한 요건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특화프로그램)** 수출 역량별 글로벌 플랫폼 입점 교육 현지화, 글로벌 마케팅, 인증, 특허등록 등 수출기업 촉진 지원
- **(박람회 참가)** 4대 소비재 특화 국제 박람회(K-소상공인 전용관 등) 및 해외 팝업으로 바이어 매칭, 현지 소비반응 등 제품 검증 기회 제공
- **(해외유통망 입점)** 무역협회 등 수출 공공·민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쇼핑몰, 백화점 등에 입점 기회 제공
- **(투자사 밋업)** 국내외 투자사 매칭을 위한 역량강화 등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 **후속연계 지원**

- **(연계사업)** 우리동네 클라우드펀딩,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LIPS I),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LIPS II) 등 후속연계 지원
- **(정책자금)** 신용보증재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4억원 이내)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우리동네 클라우드 펀딩	펀딩 수수료 및 성공 인센티브 등 지원	공단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 I)	운전·시설자금(최대 5억원) 융자 지원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LIPS II)	최대 2억원 정부보조금 지원	신용보증재단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최대 4억원 보증 지원	

3

지원대상

-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 선정 후 프로그램 활동 시 공동대표 교차 참석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기업단위로 제공
 - ** 단, 발표평가(오디션) 시 주 대표자 참석 필수 * **공동대표 대참 불가**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 **(신청요건)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소상공인**

<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신청 요건 >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수혜업체, 강한 소상공인 선정기업,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립스 I),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립스II) 既 지원 기업
②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사업 민간운영사(참고8)에게 기투자 받은 기업 (단, 현재 투자금 유지, 투자형태는 신주투자, 사업권투자, 지분전환계약 인정)
③	최근 3개년도('23년~'25년) 중 1개년 연간 수출실적 3만 달러 이상 기업 예시) 수출실적 '23년 1천 달러, '24년 3만 달러, '25년 5천 달러 : '24년도 3만 달러 이상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구분	세부요건
공통	①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육성 사업 지원제외 업종 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p16, 참고3] 확인
	②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⑤ 중소기업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⑧ 기타 중소기업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평가·선정단계에서 신청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탈락 또는 선정취소 처리 될 수 있음
** **타 부처 사업 간 중복 수혜 제한(첨부2) 있음** (소상공인 개별 타 부처 측 중복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년 4월 20일(월), 16:00 ~ 5월 15일(금), 16:00 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수(www.sbiz24.kr)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 **(제출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본인(기업)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4 사업계획서 (서식1)	5P 이내 작성 후 첨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공마이데이터 본인(기업) 행정정보 제공요구 거부 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6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7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8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9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23년, '24년, '25년	
	10 신청요건 ① : 기업가형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요건 ② : 투자계약서, 신청일 기준 주주명부 신청요건 ③ :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건) 등	해당 시 관련 서류 별도 첨부
해당시 제출	11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12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원(개인)	
	13 [가점]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참고5)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무역통계진흥원) : 운영기관에서 조회
- 그 외 증빙서류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KTnet)
 - 서비스수출실적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유의사항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 작성·첨부
-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 인정**
- 3) 항목 당 최대 30MB까지 허용되므로 용량 초과 시 사진 등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 4) 항목 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압축파일로 업로드 필요
- 5) '공공마이데이터' 본인(기업) 행정정보 제공요구 시, 일부 서류(소상공인확인서 등)는 자동 연동하여 제출되나, 서류발급 이력이 없으면 공공마이데이터 본인(기업) 행정정보 제공요구했더라도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단은 추가 증빙자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6) 법인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개인)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안내 예정

◆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기업) 행정정보 제공항목

- ※ (개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 (법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 소상공인24 서비스로 본인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은 위와 같으며,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는 제공항목 중 4종(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을 확인합니다.

□ **(중복참여 불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또는 타부처 정부의 지원사업과 당해년도 동시에 수행 불가(참고2)

□ **(사업설명회)**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운영

◆ 사업설명회 개요 ◆

- 1) 일시 : 사업 신청 기간 내 온-오프라인 3회 진행예정 링크 통해 별도 안내
- 2) 내용 : 사업개요, 소상공인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
- 3) 방법 : (온라인) 화상 회의 앱(ZOOM) 이용
(오프라인) 수도권 및 지방 현장사업설명회 운영

※ 설명회 참석 희망 소상공인은 아래의 링크 또는 QR을 통해 설문조사 응답 필요

• 링크 : <http://bit.ly/4uUyggj6>

• QR :



5 선정절차

- (평가방법)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수출유망 아이템 선발
→ 공개 오디션을 통한 유형별 지원대상 선정

<선발 평가 추진절차>

구분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아이템 선발	④ 오디션
세부 내용	소상공인 여부 등 검토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평가	기업진단 및 피칭 교육 등	유형별 공개 오디션을 통한 K-소상공인 선정
선정 규모	-	모집유형별 1.5~2배수	-	100개사
주체	주관기관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국민평가단 등

* 세부적인 평가/사업 운영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① (요건검토) 1)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제한요건 등 신청 자격 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 요건검토(소상공인, 업종, 사업자등록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등)는 신청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시까지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서류평가) 요건 충족 업체 대상 수출아이템 경쟁력, 수출전략 등을 서면으로 심층평가하여 200개사 이내 선정

* 유형별 선정 규모의 2배수(로컬트랙 120개사, 혁신트랙 80개사 이내)

-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60점)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지원 서류평가 항목(안)>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조직구성(20)	• 대표자의 역량 및 수출 관련 활동	10점	
	• 전담 인력 수출 업무 수행 능력 전문성	10점	
수출아이템 경쟁력(30)	• 수출 아이템의 차별화된 사업성	10점	
	• 수출 아이템의 시장성 및 성장가능성	10점	
	• 수출아이템 확장성	• 로컬 지역자원·문화요소 등의 글로벌 확장성 및 수용성	10점
		• 혁신 명확한 진출국 타겟 및 라이프스타일 적합성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수출전략 수립(20)	• 해외시장 발굴을 위한 노력	10점
	• 체계적인 수출 전략 목표 수립 및 관리	10점
사업화 계획(30)	• 사업화 계획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15점
	• 사업화 자금 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15점
합계 (가점 별도)		100점

- ③ (아이템 선발) 서류 평가 선정 소상공인 대상 업체 수출역량 진단 및 컨설팅, IR 피칭 교육 실시

- ④ (선발 오디션) '5분 피칭 & QnA'로 전문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참여 기업의 글로벌 성장성 진단

- (서류평가 가점) 아래 우대 조건 중 최대 점수 1건만 인정(p24 참고5)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수혜업체, 강한소상공인선정기업, 민간투자연계형매칭용자(립스I),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사업(립스II) 수혜업체의 경우 서류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불가, 최대 2점)

- 기타 중기부 연계사업의 경우 최대 1점, 행안부 등 타 부처 소상공인 관련 지원 수혜기업의 경우 서류평가 시 최대 0.5점 부여(중복불가)

* 예시: 신사업창업사관학교(2점), 지역발전특구(1점), 소상공인 IP역량강화사업(0.5점)에 대해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 신사업창업사관학교(2점)만 가점 인정

** 가점은 1단계 서류 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면 별도 보완 절차 없이 불인정 처리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사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소상공인)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대표기업)가 하여야 하며**, 소상공인24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사업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향후 사업화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 본 증권의 발급가능여부는 발급처 확인 필요

- 선정기업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및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문의

- **(온라인)** 소상공인24 -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상담 - 문의사항 등록
- **(유선)**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순번	주관기관명	문의처
1	경기창조혁신센터	(전화) 031-780-9035, 9036, 9037
		(이메일)global-sme@ccei.kr
2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9 참고자료

- 【참고 1】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참고 2】 당해 연도 동시 수행 불가 사업
- 【참고 3】 지원제외 업종
- 【참고 4】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참고 5】 서류평가 가점 증빙서류
- 【참고 6】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
- 【참고 7】 수출 소상공인 우수사례
- 【참고 8】 민간운영사 목록

참고1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 사업기간 : '26. 4월 ~ 12월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추진단계	추진내용	추진일정(안)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소상공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 sbiz24.kr 	'26. 4월 중
↓		
서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평가 	'26. 5월
↓		
평가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평가 적합 소상공인(2배수 내외 선정) 	'26. 5월
↓		
아이템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역량 진단 및 IR 피칭교육 진행 	'26. 6월
↓		
오디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계획 및 전략 등 발표 	'26. 6월
↓		
평가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대상자(소상공인) 100개사 선정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차등 지원 	'26. 7월~
↓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26. 7월~
↓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멘토단 운영 등 • 국내외 판로개척, 해외 유통망 입점 등 지원 	'26. 7월~12월
↓		
스케일업 및 후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소상공인) 대상 국내외 박람회, 유통망 입점 등 프로그램 지원 및 사후관리 * 투융자 연계, 네트워크, 성과공유 등 후속 지원 * 성과조사, 회계정산 	~ '26. 12월

참고2 동시 수행 제한 정부지원사업

연번	지원사업명	소관 기관
기업 가형 소상 공인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선도, 로컬트랙 (舊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공 단
	강한 소상공인 육성지원 (舊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 단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립스2)	공 단
중소 기업 수출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수출바우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해외전시회)	창업진흥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진흥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창업진흥원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공 단

* 동시 수행 불가 항목의 경우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참고3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표준산업분류	업종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4 소상공인 확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받은 경우 제외)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③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①~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⑥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음))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O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업종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 방법>

- ❶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 예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❷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❸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서식8>'를 작성하여 제출

참고5 서류평가 가점 증빙서류

구분	연계사업	가점	증빙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2점	- (자격)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창업기업(1기~18기) - (증빙)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증 * (1기~18기) 소상공인24(www.sbiz24.kr)-마이페이지-증명서발급신청-등록-기업가형소상공인확인서 발급₩
	'25년도 장인학교	2점	- (자격) '25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장인학교트랙) 수혜자 중 공고게시일 기준 이전에 창업한 자 - (증빙) 장인학교 수료증 * 공단에서 발급한 장인학교 수료증 ** 로컬기업 육성 사업만 가점 부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2점	- (자격) 개인·협업·로컬브랜드·글로벌상권 사업 수혜자 - (증빙)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 소상공인24(www.sbiz24.kr)-'증명서발급'탭-'증명서발급신청'탭-기업가형소상공인확인서 선택-'발급신청'클릭-'증명서목록'탭에서 확인 **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만 가점 부여
	지역발전특구	1점	- (자격) 공고 전년도 우수특구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관련 기업 중, 지자체 추천절차를 거쳐 우대대상으로 확정된 자 - (증빙) 중소기업부(특구운영과) 통보 공문 * 로컬기업 육성 사업만 가점 부여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1점	- (자격) 공단에서 인정한 정식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업체 - (증빙) 해당 공단 담당 사업부서를 통해 별도 확인 예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1점	- (자격) '25년부터 해당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 (증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발행한 확인 공문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	1점	- (자격) 최근 4년간 해당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22~'25년) - (증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발행한 확인 공문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0.5점	- (관련지역) 해당 사업에 선정된 51개 지자체('18~'25년) * '26년 신규 청년마을 선정지 10곳 포함도 가능(4월 중 최종 선정) - (자격)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한 청년단체·기업의 대표 혹은 운영진(1년 이상 활동)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확인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청년마을명, 운영기간, 운영내용 및 역할 등이 포함된 확인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0.5점	- (관련지역) 해당 사업에 선정된 38개 지자체('23~'25년) - (자격)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로컬브랜딩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 직인이 있는 추천서
행정	인구감소지역	0.5점	- (자격)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

구분	연계사업	가점	증빙자료
안전부	내 소상공인		치해 있는 소상공인 - (증빙) 별도 없음 * 로컬기업 육성 사업만 가점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	0.5점	- (관련지역)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문화도시(1~4차, 24곳)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13곳) - (자격)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문화도시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의 직인이 있는 문서(공문 등)
국토교통부 등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0.5점	- (자격)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 소상공인 - (증빙) 지역활력타운 선정 보도자료, 지역활력타운 선정지 내 입주를 증빙할 수 있는 지자체 확인서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0.5점	- (자격) 해당 사업으로 준공('19~'25년)한 시설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사업을 운영중인 운영주체(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업종 등 조건 필수) - (증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공문
	농촌형 비즈니스 확산 사업	0.5점	- (자격) 해당 사업에 선정된 업체 * '26년 신규 선정 업체 포함도 가능 2월 중 최종 선정 - (증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결과 안내 공문
	농촌융복합산업 혁신 거점 조성 사업	0.5점	- (자격) 최근 5년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받은 업체('20~'25) - (증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결과 안내 공문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농진청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0.5점	- (자격) 해당 사업으로 구축('10~'24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창업보육과정을 이수한 자(개인, 법인 등) - (증빙)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보육 교육(과정명: '가공' 관련 교육 인정) 참여자(개인, 조직체 등), 교육기간(횟수) 및 이수시간등이 포함되고, 해당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인이있는 '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
지재처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	0.5점	- (자격) 지식재산센터의 'IP창출 종합패키지('22~'25년)' 수혜 기업 - (증빙)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에서 발행한 수혜사실 확인서류(공문 등)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0.5점	- (자격)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혜 기업 - (증빙)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발행한 수혜사실 확인서류(공문 등)
기재부	중소기업 기술마켓	0.5점	- (자격)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술-제품 등록 기업 - (증빙)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 가점 증빙서류 발급방법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6 제 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서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참고7 수출 소상공인 우수사례[로컬/혁신트랙]

로컬트랙 우수사례

<p>주식회사 00컴퍼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 로컬트랙 - 식품 · (아이템) 국내 유일 감태 명인의 100% 자연산 감태 생산 및 가공하여 감태 면, 캐러멜, 분말 · (내용) 40년 장인의 기술을 활용한 인지도 낮은 원물(감태)의 가치 재발견. 국내외 유명 셰프들과의 협업을 통해 미술랑 레스토랑 등 하이엔드 시장 진입 · (수출) 미국, 벨기에, 프랑스, 상해 등 수출 	
<p>0000 주식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 로컬트랙 - 생활 · (아이템) 지역 원물을 활용한 뷰티 및 생활용품 · (내용) 제주에서 서식하는 2,000여 종의 식물을 원료로 활용하여 치약, 바디워시, 풋워시 등 뷰티·생활용품 개발 · (수출) 일본 수출 (멀티숍 입점) 	

혁신트랙 우수사례

<p>널오 (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 혁신트랙 - 패션 · (아이템) 슈퍼 논슬립과 슬로프형 에어홀 기술로 제조한 간호사를 위한 신발 '널핏' · (내용) 의료 현장에 최적화된 기능성 신발 개발. 피로를 완화하는 '아치 서포트' 설계 및 '슈퍼 논슬립' 미끄럼방지 기능, 미국 간호 시장을 타겟으로 글로벌 현지화 · (수출) 미국 아마존 진출 외 22개국 수출 	
<p>00헬스케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 혁신트랙 - 식품 · (아이템) 근소실 억제 역할 바이오 기술 적용한 근손실 방지 크림 · (내용) 피부에서 자가 분비되는 근육 보호물질의 부스팅을 통해 소화 흡수 과정 없이 간편하게 바르는 근육건강 솔루션 '더마핏' · (수출) 미국, 일본 등 수출 	

참고8 민간운영사 목록

LIPS 운영사

연번	운영사명	연번	운영사명
1	뉴키즈인베스트먼트	31	벤처스퀘어
2	더인벤션랩	32	스타트런
3	로우파트너스	33	에이씨앤디씨
4	시리즈벤처스	34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5	알파브라더스	35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6	킹고스프링	36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7	나눔엔젤스	37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8	마크엔컴퍼니	38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9	스타벤처스	39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0	씨엔티테크	40	렛츠
11	어번데일벤처스	41	큐네스티
12	엔피프티파트너스	42	케이드림파트너스
13	엠와이소셜컴퍼니	43	컴퍼니에이
14	오픈놀	44	티비즈
15	와디즈파트너스	45	투션캠퍼스
16	와이앤아처	46	아이엠파트너스
17	웰컴벤처스	47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8	제이비벤처스	48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18	컴퍼니엑스	49	아이디어파트너스
20	콜즈다이나믹스	50	임팩트재단
21	크립톤	51	에스에스투안베스트먼트
22	페인터즈엔벤처스	52	피지벤처스
23	한양대기술지주회사	53	GS리테일
24	탭엔젤파트너스	54	메이크공육사
25	소풍벤처스	55	업그레이드파트투
26	CJ ENM	56	제이엔피글로벌
27	임팩트스퀘어	57	와우파트너스
28	다래전략사업화센터	58	젠엑시스
29	비전웍스	59	DHP
30	엔솔파트너스	60	피플인베스트먼트